

## 한국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

민 천 식\*\*

대구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

---

---

### 《 요약 》

---

---

이 논문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써, 통합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2008)과 2011년 「국회보고자료」, 그리고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된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통합교육 해결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8명과 함께 심층적인 개별 면담과 전체 토론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물리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사 양성과 개별화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문제이다.

---

---

주제어 : 한국 통합교육 현황, 통합교육 해결과제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오늘날 패러다임의 이동과 사회변화에 따라 특수교육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이 아니라 교육환경에서 부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 중심의 차별적 특수교육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반교육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교육의

---

\* 이 논문은 2012년 대구교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5회 창과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smin@dnue.ac.kr)

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모든 교원이 공유하고, 차별 없는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학교 환경 및 여건 조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UN의 장애인권리협약, UNESCO의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 요구, OECD의 장애, 학습곤란, 불이익 학생에 대한 일반교육 접근성 보장 지원 요구 등 각 국제기구에서 장애의 개념을 확장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 접근권 및 적합한 교육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특수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화, 분권화에 대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지원인력간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립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의 배치와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와 특수교육 지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를 위한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시행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8~'02)」과 후속대책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3년 2월 19일에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포함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이하 특수교육법이라 칭함)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합동으로 2008년 8월 6일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8~'12)」 및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그리고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해소 및 교원의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추진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둘째,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셋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넷째,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등이다.

따라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 통합교육을 추진해 왔던 위의 네 가지 내용의 법적 근거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을 반성하고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가진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보려는 연구로써,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에 대한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본다.
- 둘째,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본다.
- 셋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에 대한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본다.
- 넷째,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본다.

## 3. 연구 방법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통합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부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2008)과 2011년 「국회보고자료」, 그리고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된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통합교육 해결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8명과 함께 심층적인 개별 면담과 5회에 걸쳐 전체 토론을 실시하였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심층개별면담과 토론의 내용은 연구 문제에서 제시한 네 가지 즉, 첫째,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둘째,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셋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넷째,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것이며,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개별면담 시 사전 허락을 얻어 녹음을 하고, 녹음을 전사하여 전체 토론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토론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현장 요구 사항을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 II. 연구 결과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현황과 해결과제

#### 1) 현 황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제25조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순회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계	395	721	482	329	1,927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1>에 제시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현재 유치원 395명, 초등학교 721명, 중학교 482명, 고등학교 329명 총 1,927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해결과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이 각 시도별 각 학교급별로 지원되고는 있으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14,741명인 점을 고려할 때 1,927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완전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회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할 교육적 지원이 통합학급 교사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에 대한 지도 내용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장애영역에 대한 전문 순회교사 즉,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각 장애영역의 순회교사를 채용하여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 2.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현황과 해결과제

### 1) 현 황

#### (1) 통합교육 담당교사

특수교육법 제4조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학교교사자격 추가 소지자		60시간 이상 연수		30시간 이상 연수 (30~59시간)		미이수		계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계	701	1.5	11,394	24.2	1,449	3.1	33,535	71.2	47,079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은 2011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7,079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701명(1.5%),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1,394명(24.2%), 3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는 1,449명(3.1%), 연수 미이수자는 33,535명(71.2%)으로 나타났다.

5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2) 통합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4항 3호에 의하면,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교원의 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현황

시·도	월평정점	가산점 부여 대상
인천	0.0053 (승진)	유·초·중·고 교사
울산	0.0053 (승진)	유·초 교사
경남	0.0416 (전보)	유·초 교사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울산, 경남 3개 지역으로, 인천과 울산은 승진 가산점을, 경남은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제 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2008.1.8.)에는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 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표 4>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인원 (단위 : 개, 명)

시·도	연수과정(직무)						계	
	30시간 미만		30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계	354	6,450	647	3,291	918	30,522	1,919	40,263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2011년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현황은 30시간 미만 354개 연수과정에 6,450명,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47개 연수과정에 3,291명, 60시간 이상 948개 연수과정에 30,522명이 이수하여 총 1,919개 연수과정에 40,263명이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통합교육 시범학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마련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통합교육 시범학교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교, 천원)

시·도	지정별				지원예산액
	과정	시·도	지역	계	
계	-	35	7	42	309,200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5>를 살펴보면,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개발·적용 등을 위해 전국 42개 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②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원)

시·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수	총회원 수	지원예산
부 산	4	29	21,500
대 구	2	131	40,000
경 기	6	68	900
강 원	1	15	-
충 남	4	37	11,300
전 북	1	25	2,000
경 남	5	68	2,500
제 주	2	38	1,550
<b>계</b>	<b>25</b>	<b>411</b>	<b>79,750</b>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6>을 살펴보면, 통합교육 연구를 위한 일반교사 연구회는 총 25개가 있으며 411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 수는 경기도가 6개로 가장 많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은 아직 연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해결과제

(1) 통합교육 담당교사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및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통합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승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장애학생의 통합이 물리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학급의 교사가 매년 바뀌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배정 방식 또한 담임교사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임의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임 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담임교사에 대하여 일시적인 직무 연수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은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학생의 통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수학급에로의 분리교육도 최소한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책무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가져야 할 교육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할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통합교육의 참여율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경우 독특한 교육적 요구로 인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적 중재를 시행할 것이 제안되고 있으나, 통합학급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하여 장애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통합학급 교사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교사들이 71.2%인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학급에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부가적 업무 부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에 더하여 장애학생 개인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처럼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인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체제에서 볼 때, 통합학급 담당교사 양성은 교육대학교에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일정 과정을 이수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승진 또는 전보 가산점을 제공하는 것은 그나마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제안되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는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으로 이해되며, 그나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은 통합학급을 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써,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이나 자질에 대하여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여 통합학급을 운영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통합학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통합학급의 일반학생 수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일반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소양 함양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특수교육개론 과목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를 이수한 인원이 40,263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은 먼저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소양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수교육관련 연수의 내용이 현장에 대한 시사성이 있는가, 또는 연수 과정의 내용이 현장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를 잘 반영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나 학점 이수의 기회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과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의 증대가 긍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 기대와 더불어 다양한 연수의 참여를 통해 일반 교사들이 장애학생의 특성을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 또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소양 함양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이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따라 특수교육관련 강좌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지식의 증대가 태도에 긍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 ① 통합교육 시범학교

시범학교의 운영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까지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수행단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학교 운영의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시범학교 운영은 자체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행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서 수립과정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수행됨으로써 시범학교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다양한 선행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절차가 미흡함으로써 새로운 방안의 제시보다는 기존의 실행방안을 답습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시범학교 운영이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범학교 운영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계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문적 풍토가 산학연계의 강화와 더불어 다학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적 학교 현장에서의 시범학교 운영도 다양한 학문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적 접근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 접근 중 연구회 운영 방식은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실행에 따른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제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안이 현장에서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의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강화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현황과 해결과제

#### 1) 현 황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장애 영역	재학중인 학교 수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정규평가 실시학교		장애학생 제외 학교		평가조정 실시학교		대안평가 실시학교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		모두 포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시각	543	287	52.9	8	1.5	187	34.4	54	9.9	124	22.8	86	15.8	31	5.7	93	17.1
청각	1,685	1,063	63.1	29	1.7	441	26.2	198	11.8	461	27.4	234	13.9	103	6.1	210	12.5
지체	3,437	2,130	62.0	107	3.1	635	18.5	826	24	884	25.7	268	7.8	307	8.9	473	13.8
지적	6,943	3,429	49.4	389	5.6	966	13.9	2,832	40.8	1,683	24.2	379	5.5	1,176	16.9	890	12.8
정서	1,799	996	55.4	55	3.1	243	13.5	598	33.2	444	24.7	130	7.2	234	13.0	316	17.6
자폐	2,047	765	37.4	68	3.3	384	18.8	919	44.9	358	17.5	172	8.4	311	15.2	291	14.2
의사소통	798	445	55.8	39	4.9	69	8.6	264	33.1	159	19.9	24	3.0	106	13.3	126	15.8
학습	2,564	1,633	63.7	164	6.4	183	7.1	747	29.1	614	23.9	107	4.2	279	10.9	379	14.8
건강	1,450	1,079	74.4	42	2.9	173	11.9	210	14.5	421	29.0	100	6.9	83	5.7	208	14.3
발달	735	268	36.5	44	6.0	97	13.2	339	46.1	89	12.1	38	5.2	136	18.5	136	18.5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7>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에 따른 10개 장애영역에 대해서 모두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영역별 학력평가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543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287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187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54개교, 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8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93개교로 나타났다.

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1,685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1,063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441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198개교, 청각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29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210개교로 나타났다.

지체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437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2,130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635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826개교, 지체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107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473개교로 나타났다.

정신지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6,943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3,429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966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2,832개교, 정신지체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389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890개교로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1,799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996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243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598개교, 정서·행동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55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316개교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2,047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765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384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919개교, 자폐성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68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291개교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798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445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69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264개교, 의사소통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39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126개교로 나타났다.

학습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2,564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1,633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183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747개교, 학습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164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

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379개교로 나타났다.

건강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1,450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 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1,079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173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210개교, 건강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42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208개교로 나타났다.

발달지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735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 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268개교, 평가조정 실시 학교는 97개교, 대안평가 실시 학교는 339개교, 발달지체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44개교이고,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모두 마련한 학교는 136개교로 나타났다.

## 2) 해결과제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의 운영은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교육적 중재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각 장애영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습요구 파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특수학교(급) 대상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현장에 적극 보급함으로써, 결국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적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장애학생의 학력이 일반학생과 비교되어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와 평가 조정은 그 결과의 활용 및 평가의 본질적 문제를 고려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의 도입은 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먼저 분명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이 합당하다면 그 목적에 따른 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학력 위주의 평가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 4. 장애인식 개선 현황과 해결과제

### 1) 현 황

(1)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단위 : 교, %)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2회 이상		연1회		연2회 이상		연1회		연2회 이상		연1회		연2회 이상		연1회					
	전체 학교수	학교 비율	학교 수	비율	전체 학교 수	학교 비율	학교 수	비율	전체 학교 수	학교 비율	학교 수	비율	전체 학교 수	학교 비율	학교 수	비율				
계	8,334	6,071	72.8	2,115	25.4	5,944	5,592	94.1	300	50.0	3,152	2,875	91.2	230	7.3	2,283	1,945	85.2	295	12.9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8>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유치원 72.8%, 초등학교 94.1%, 중학교 91.2%, 고등학교 85.2%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21조에 ‘각급학교의

6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시설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10년부터 의무설치 항목 중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교	율
특수학급설치 유치원	254	237	93.3	229	90.2	230	90.6	226	89.0	187	73.6	180	70.9	236	92.9	222	87.4	145	57.1	123	48.4	196	77.2	79.1
특수학급설치 초중고학교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특수학급미설치 초중고학교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특수학교	155	155	100	155	100	155	100	155	100	154	99.4	149	96.1	155	100	155	100	140	90.3	135	87.1	147	94.8	97.1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위의 <표 9>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254개교이며,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9.1%를 보였다. 특수학급설치 초중고 학교는 5,999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6.1%를 보였다.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는 5,390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4.4%를 보였다. 특수학교는 전체 155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7.1%를 보였다.

## 2) 해결과제

### (1)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의 통합 및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매우 많은 학교들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교육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의 실시가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이해교육의 내용과 학년별 학생별 실태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법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활동 내에서 함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은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정서적 감응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체험을 통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의 방식을 적용하고, 고학년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 장애에 대한 지식 등 학년성을 고려한 장애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내용 중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원을 편성함으로써 장애이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자료 및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보급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음악회, 작품전시회, 콘서트, 장애이해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과, 방송매체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전국단위 학생 행사를 통한 장애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편의시설 설치

모든 시설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통합교육을 위한 필수요건의 한 부분이며,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물리적 통합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모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보편적 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결 론

이 논문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써, 통합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과 2011년 「국회보고자료」, 그리고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된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통합교육 해결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8명과 심층적인 개별 면담과 전체 토론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현황은 총 1,927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결과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각 장애영역의 순회교사를 채용하여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현황은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7,079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701명(1.5%),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는 12,843명(27.3%), 연수 미이수자는 33,535명(71.2%)이며,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인천과 울산은 승진 가산점을, 경남은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전체 일반교원 중 총 1,919개 연수과정에서 40,263명이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개발·적용 등을 위해 전국 42개 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였고, 통합교육 연구를 위한 일반교사 연구회는 총 25개 411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과제는 교원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양성하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수교육관련 연수 강좌의 질적 수준 보장과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의 확대와 지원 강화 및 시범학교 운영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현황은 특수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에 따른 10개 장애영역에 대해서 모두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과제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제와 평가 조정이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학력 위주의 평가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장애인식 개선 현황은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고,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254개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9.1%, 특수학급설치 초·중·고등학교는 5,999개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6.1%, 특수학급미설치 초중고등학교는 5,390개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4.4%, 특수학교는 전체 155개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7.1%로 나타났다. 해결과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년성을 고려한 장애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이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 중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원을 편성해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모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보편적 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종합해 보면,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사양성과 개별화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합학급은 일반교사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우선 배치되어야 하지만, 통합학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전국 교육대학교에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양성할 것과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책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이미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10여 년 전에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일반교육에서도 개별화교육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특수교육에서는 개별화교육을 문서상 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교육에서는 개별화교육을 수준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화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초래한 결과일 것이다. 개별화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기준은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철학적 기반에 따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잠재능력 또는 장점을 극대화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별화교육이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을 때, 통합교육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2008. 8. 6).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6128(2011. 11. 30.).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국회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2호.
-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인적자원부 (1998).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8~'02)」.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과.
- 국무조정실 (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국무조정실(2003. 2. 19.).
- 국무조정실 (2003).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국무조정실(2003. 2. 19.).
- 국무조정실 (2008).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8~'12)」. 국무조정실(2008. 8. 6.).
- 민천식 (2012). 한국 통합교육: 현재와 미래.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제5회 창파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Min, Chun-Sik**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for a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 inclusive education. To see the current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inclusive education that included in 「The 3rd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five years plan ('08~'12)」, the 2011 「Congressional reporting」, and 「2012 Special education operating plan」 were mainly analyzed. To see the challenge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I have conducte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nd discussions with eight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ere majored in special education at graduate school, and were experienced in integrated classroom.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ed in the physical dimension. But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ly inclusive education, professional teacher's education can be responsible for integrated classes, and activation plan of individualized education is an urgent problem.

**Key Words :** korea inclusive education, current status, challenges

---

논문 접수: 2013. 08. 01 심사 시작: 2013. 08. 09 게재 확정: 2013. 09. 23